(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2-032호

재단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상시 모집 공고

「재단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산하시설 전북종합재가센터에서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지원단 인력 채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Ⅰ 채용개요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채용 직위	채용 인원	채용 형태	근무시간	직무내용	근무지
전북종합 재가센터	긴급돌봄 서비스지원단 (돌봄제공인력)	20명	계약직 (시간제)	09:00~18:00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외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전북 도내 (대상자 자택)

2. 채용방식

❍ 계약직(시간제) : 채용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 본 모집공고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풀(예비 인력 구성) 모집공고에 해당하며, 긴급돌봄 사례 발생 시 실제 고용계약 체결됨.
- 계약 기간은 '긴급돌봄서비스 파견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약 기간은 개인별 상이하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3. 보수기준

구분	채용직위	보수기준		비고
전북종합 재가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돌봄제공인력)	코로나19 돌봄	(시급) 16,460원×1시간=16,460원/시간 (위험수당 6,250원 포함)	2022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지침 기준
		코로나19 외 돌봄	(시급) 10,210원×1시간=10,210원/시간	

Ⅱ 응시 자격요건

1. 공통요건

❍ 기 준 일 : 공고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거 주 지 : 공고일 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응시 자격기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전북종합 재가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돌봄제공인력)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간병인 교육 이수자 ※ 돌봄 관련(아동, 노인, 장애인) 업무 경력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제39조의17,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8.「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및 확인·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장애인활동법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법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Ⅲ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1. 채용일정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2022. 3. 23.(수) ~ 상황 종료 시까지		2022. 3. 23.(수) ~ 상황 종료 시까지		2022. 3. 30.(수) ~ 매주 수요일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2022. 3. 31.(목) ~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2022. 4. 4.(월) ~ 매주 월요일		서비스 제공 시작일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공지할 예정

2. 세부사항

구분		내용
채용공고	공고 기간	· 2022. 3. 23.(수)~**상황 종료 시까지**
	공고 장소	·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 · 전북도청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https://job.cleaneye.go.kr)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22. 3. 23.(수)~**상황 종료 시까지**
	접수 방법	① **방문접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2층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 ② **온라인 접수**: 이메일(**kjhung4566@jeonbuk.pass.or.kr**) ※ 메일 발송 시 제목에 지원 직종 및 이름 기입 · 메일 제목 예시: [긴급돌봄지원단 지원-응시자명]
	제출 서류	① 긴급돌봄지원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류심사	심사 대상	· 접수자 전원
	서류 합격자 발표	· 일자: 2022. 3. 30.(수)~**매주 수요일** ·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서류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 **안내**
	참고 사항	·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시험	면접 대상자	· 서류 합격자
	면접 일자	· 일자: 2022. 3. 31.(목)~**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 응시 및 면접 인원에 따라 면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예정
	제출 서류	·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 · 관련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진행 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인성과 직업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창의성 및 전문성, 발표력 등
	채점 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 일자: 2022. 4. 4.(월)~**매주 월요일** ·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공지
임용	임용 예정일	· 서비스 제공 시작일

3. 유의사항

- ❍ 코로나 19 확진 및 발열 여부에 따라 면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면접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 지원 희망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시 응시 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이 공고문에 의한 채용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제외한 출신 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 면접시험 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채용직위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한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방법을 우편으로 요청할 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등기우편 비용을 선 계좌이체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착불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고득점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